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600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공사
피 고	○○시 ○○청장
변 론 종 결	2014. 7. 18.
판 결 선 고	2014. 9.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구 ○○동 27-○○ 잡종지 8,073㎡에 관하여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재산세 53,008,250원의 부과처분 중 49,239,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18.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에 향상을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천연가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9. 12. 15.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고, 2013. 1. 1. 현재 주주현황은 총 발행주식 수 77,284,510주, 자본금 386,422,550,000원 중 정부 20,758,110주, 26.86%, ○ ○ 공사 118,900,000주, 24.25%, 지 방자치 단체 합계 7,326,600주, 9.48%[1] 및 일반주주 30,299,800주, 39.21%이다.

다. 원고는 종래부터 ○ ○ 구 ○ ○ 동 ○ ○ -18 잡종지 8,0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부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 는 원고가 구「○ ○ ○ ○ 구 구세 감면조례」(2012. 5. 4. ○ ○ 시 ○ ○ 구 조례 제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에 해 당한다고 보아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여왔다.

라. 이후 2012. 2. 1.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시행되자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정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재산세 53,008,250원(과세표준은 15,938,653,500원이고 도시지역분 재산세

1) 서울특별시 3.99%, 경기도 1.22%, 인천광역시 0.70%, 부산광역시 0.66%, 경상남도 0.59%, 대구광역시 0.42%, 전라남도 0.40%, 대전광역시 0.38%, 광주광역시 0.33%, 경상북도 0.31%, 충청북도 0.26%, 충청남도 0.19%, 강원도 0.0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21,130,950원이 포함된 세액이다)를 감면 없이 모두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자치단체는 구 한국가스공사법(1982. 12. 31.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자본금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주식의 거래가 자유롭고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며 각 주주는 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 49,239,370원{= 전체 재산세액 53,008,250원 × (1 - 감면율 0.75 × 지방자치단체 지분율 9.48%)}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는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라는 제하에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각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감면조항인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종류로 지방직영기업(제5조), 지방공사(제49조) 및 지방공단(제76조)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자본금의 1/10 이상 1/2 미만을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기타 출자법인, 이하 지방공기업과 통틀어 '지방공기업 등'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제77조의3)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 제4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또는 정부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특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내용을 제한적으로 법정화한 점,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법이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등을 구분하는 이원적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감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조항이 기타 출자법인에 대한 감면요건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행위 뿐만 아니라 설립행위까지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 함은 그 설립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한 모든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의 주체가 된 지방공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단계에서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출자비중이 1/10에 미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설립의 주체로 보기 어렵거나, 해당 기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제정되어 2014. 9. 25.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100 미만인 경우와 공공기관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정부는 국가기반사업인 가스공급을 위해 1980년부터 경제장관협의회를 통해 가스도입사업의 기본방침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라 1982. 12. 31. 구 한국가스공사법이 제정된 사실, 원고는 1983. 8. 18. 정부(출자금 40억 원, 지분율 61.2%)와 한국전력공사(출자금 25억 3,600만 원, 지분율 38.8%)의 출자로 설립된 이래 수년간에 걸쳐 자본금을 확충하면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점진적으로 구축한 사실, 이후 원고는 1987년 2월 수도권에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한 이래 전국적인 가스공급망을 갖추고 천연가스의 제조·공급과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을 담당하여 왔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 되어 있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1986년 ○○○ 시가 처음으로 원고가 발행한 40만 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3.12%를 획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13년 현재 원고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지분율이 3.99%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율을 모두 더하더라도 10%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는 구 한국가스공사법에 근거하여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설립된 국가공기업에 해당할 뿐 이 사건 감면조항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방공기업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이 사건 감면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보유한 기관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제3항은 원고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발행한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제11조), 투자나 융자에 관한 사항(제12조), 이익금의 처리방법(제13조),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제14조) 등에 있어서 상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수한 규율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법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 임원의 임명, 예산회계, 경영평가와 감독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율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의 설립 및 운영상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부 주식회사로서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이 사건 감면조항 소정의 '상법에 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른 주식회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결국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김재령

판사 김태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관계 법령

● 구 한국가스공사법(1982. 12. 31. 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 한국가스공사법

제5조(주식의 발행)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11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副産物)의 정제·판매
2. 천연가스의 인수기지(引受基地)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

제12조(투자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제13조(이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2012.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제정, 2014. 9. 25.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